

##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대한 변경약정서(2차)

본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대한 변경약정서(2차)(이하 “본 변경약정”)은 2021년 2월 8일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위탁자                    주식회사 엔에이치윌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위탁자”)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 13층(여의도동, 농협재단빌딩)

수탁자                    엔에이치농협리츠운용 주식회사(이하 “수탁자”)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 13층(여의도동, 농협재단빌딩)

### 전 문

위탁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고, 수탁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산관리회사이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2019년 11월 25일 위탁자의 업무 중 자산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자산관리위탁계약」(이하 “최초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30일 최초 자산관리위탁계약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대한 변경약정서」(이하 “1차 변경약정”이라 하며, 최초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대하여 1차 변경약정으로 변경된 계약을 이하 “자산관리위탁계약”)를 체결하였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변경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자산관리위탁계약의 일부를 추가로 변경하고자 한다.

이에 본 변경약정의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제 1 조 (용어의 정의)

본 변경약정에서 사용된 용어는, 본 변경약정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자산관리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문맥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변경약정에서 사용된 용어는 단수 및 복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본 변경약정에서 어떠한 계약이나 서류를 지칭할 경우, 이는 변경, 수정, 보충, 대체된 계약이나 서류, 그에 부수하거나 수반되는 일체의 권리문서를 포함하며, 본 변경약정에서 달리 규율하지 않는 한 본 변경약정에서 언급된 자는 그 적법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 제 2 조 (자산관리수수료의 변경)

자산관리위탁계약 「별지 1」 ‘수수료’ 제2항 자산관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매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a) 위탁자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총자산에서 (b) 위탁자가 보유한 자리츠(위탁자가 지분증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중 수탁자가 위탁관리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함)의 지분증권에 대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a-b)의 연 영점이퍼센트(0.2%)를 매 결산기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 지급한다. 다만, 당해 수탁자의 자산운용 업무 수행기간이 6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결산기에 대한 수수료는 180일에 대한 실제업무수행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6개월이 초과될 경우 매 결산기 단위의 수수료와 6개월이 초과된 기간을 180일에 대한 실제업무 수행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제 3 조 (효력)

- (1) 본 변경약정의 효력은 위탁자 발행주식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상장된 날 이 속한 위탁자의 결산기(결산기는 위탁자의 정관에 따름)의 초일부터 발생한다.
- (2) 본 변경약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자산관리위탁계약은 본 변경약정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 (3) 본 변경약정과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본 변경약정이 우선한다.

- (4) 본 변경약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변경약정에서 자산관리위탁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각 일부를 구성하고 일체의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된 개별약정 및 제출서류에 자산관리위탁계약 또는 본 변경약정에 따라 변경되는 조항이 인용되거나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 등의 해당 규정은 본 변경약정에 따라 변경된 자산관리위탁계약 또는 내용을 인용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
- (5) 본 변경약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4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변경약정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고 규율되며, 본 변경약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음페이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하여 이하 여백]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변경약정의 당사자들은 첫머리 기재일자에 각자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로 하여금 본 변경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한 후, 각자 보관하기로 하였다.

위탁자

주식회사 엔에이치엘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박 영 희



수탁자

엔에이치농협리츠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철 수

